

하동군의회 규칙 제 17 호
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
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9월 22일

하 동 군 의 회 의 장



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」 조례”를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접수기관”을 “접수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”를 “18 세 이상이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”을 “「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사제지간”을 “사제지간 등)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(시험실시기관의 장,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「국가기술자격법」 그”를 “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그”로, “포함한다) 및”을 “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영제17조제1항제8호”를 “영 제17조제1항제8호”로, “하며,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“6급 이하”는 “연구사 또는 지도사”로 본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제3호”를 “제4항제3호”로 한다.

3.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대학졸업자 : 6급 · 7급 · 연구사

나. 전문대학졸업자 : 7급 · 8급 · 지도사

다. 고등학교졸업자 : 9급

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직급중”을 “직급 중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(이하 “평정규칙”이라 한다)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.

제26조 중 “연구 및 지도직규정”을 “연구및지도직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와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와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)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4조(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) ----- -----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 ----- -----.
제6조(응시수수료) ① (생 략)	제6조(응시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응시원서 접수기관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	3. ----- 접수기간 ----- -----

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	----- ----- 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응시결격사유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	제7조(응시결격사유) ① 법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응시연령)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 1. 7급 이상 : 20세 이상 2. 8급 이하 : 18세 이상	제8조(응시연령) ----- ----- ----- ----- 18세 이상이어야 ----- -----. <삭 제> <삭 제>
제10조(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)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.	제10조(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시험위원) ① ~ ③ (생략)	제11조(시험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	④ -----

제14조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(연구사·지도사를 포함한다) 및 공무원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)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. 다만,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

제14조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 ①
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그 포
함한다)

<단서 삭제>

예 응시하는 경우(필기시험에 한하며,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)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
시자격) (생략)

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연구및지도직규정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
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
시자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
분과 같음)

(2) _____ 「지방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
등에 관한 규정」

_____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_____

에 따라 고등학교·전문대학·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.

가. 대학졸업자 : 6급·7급·
연구사

나. 전문대학졸업자 : 7급·8
급·지도사

다. 고등학교졸업자 : 9급

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
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
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
있는 사람은 별표 13 및 별표 1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은
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대학졸업자 : 6급·7급·
연구사

나. 전문대학졸업자 : 7급·8
급·지도사

다. 고등학교졸업자 : 9급

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-----

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
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
하며,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
후단 중 “6급 이하”는 “연구사
또는 지도사”로 본다. 이 경우,
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
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
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
을 갖추어야 한다.

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
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
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
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
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
에 따른다.

⑦ ~ ⑨ (생략)

제23조의2(연구직 및 지도직공무
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
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) ①
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
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
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
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
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연구사·지도사로 근무한 기

한다.

⑥

제4항제3호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2(연구직 및 지도직공무
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
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) ①

1. (현행과 같음)

2.

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 급별(7급이상)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 는 경우 초과된 <u>직급중</u> 가장 상위 직급 ② (생 략) 제25조(가산점) ① 「지방공무원 평정 규칙」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. ②·③ (생 략) 제26조(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)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 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 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직급 중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(가산점) ①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(이하 “평정규칙”이 라 한다)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6조(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) ----- 연 구및지도직규정 ----- ----- -----.
---	--